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공무직 근로자[연구원 라급(고고학), 연구원 라급(보존과학)]로 근무할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19일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

□ 최종합격자 * 개별문자발송

채용예정분야	직종	최종합격자	비고
연구원 라급(고고학)	공무직	고고학(라급)-003 정○○	
연구원 라급(보존과학)	공무직	보존과학(라급)-003 최○○	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제출기간 및 방법 : 2024. 8. 26.(월) 18: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
-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75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
- 제출서류
 -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(없을 시 2년 이내 건강검진확인서로 대체)
 - ③ 반명함 사진(3×4) 2매
 - ④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
 - ⑤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 -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※ [붙임 1] 참조
 -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※ [붙임 2] 참조
 - ⑧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 ※ [붙임 3] 참조
 - ⑨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※ [붙임 4] 참조
 - ⑩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☎ 063-290-9303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 반환 청구기간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단,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하며(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)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 -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: 2024. 8. 20.(화) ~ 9. 3.(화)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[붙임 5]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- 붙임
1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
 2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
 3.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.
 4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
 5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[붙임 2]

■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8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국립완주문화 유산연구소	채용방법	제한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	연구원 리급 (고고학/보존과학)
	채용사유	결원에 따른 신규채용	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	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붙임 5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